

【일련번호: ㄱ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 냉난방용 유류 구입 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매년 ◆◆■■■■ 냉난방 운영에 필요한 유류(경유)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30.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실무 매뉴얼(행정자치부 2016. 1. 2.)에 의하면 정상적 성격의 수용비인 경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명시하고 있다.

※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http://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or.kr](http://www.opinet.or.kr)) 유가 확인 가능(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조달청 자재장비과-13476(2016.11. 2.) 및 경상남도 회계과-42246(2017.10.17.)호에 의하면 조달청에서는 2012년 물가관계 장관회의에 따라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과 유류가격 인하를 위하여 공공부문 유류(차량 및 2만 ℓ 미만 소규모 저장용) 물량을 통합하여 공동구매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류공동구매 협약주유소(할인율 및 Cash-bag포인트 적립금 감안)보다 비협약 주유소가 유리한 조건이라면 비협약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유소별 가격 차이가 많은 등유와 난방·취사용 등 대량 물량은 유류공동구매보다 더 유리할 경우 자체 입찰 등으로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무과에서는 재무과-26679(2018. 9. 17.)호로 공용차량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공동구매 서비스(카드) 이용 협조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한 사실이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는 2018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냉난방용 유류를 10건 70,300 ℓ, 금95,708,500원을 동일 업체(ⓂⓂ주유소)와 수의계약하여 집행(별첨)하면서 오피넷(유가 정보시스템)에서 경남 평균가격, 경남 ○○군 또는 경남 ○○군 ○○면 소재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해당 공급업체 견적가격보다 더 낮은 관내 오피넷 등록 주유업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여 연간단가계약 및 자체 입찰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냉난방용 유류 납품이 가능한 업체의 납품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 냉난방용 유류 구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냉난방용 유류 구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Q(현 ☒☒), S(현 ΩΩ)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냉·난방에 필요한 유류(경유)구입시 연간단가계약 및 자체 입찰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ㄱ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공유재산 공제업무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 건물시설물 공제등록 해지 대상 회비 납부내역 】

시설물명	주소	가입금액 (단위: 원)	연도	회비납부액 (단위: 원)	비고
계				715,120	
○○○○ 대형파라솔	○○면 ○○리 86번지외	10,000,000	2018년도	12,130	
			2019년도	12,370	
			2020년도	12,370	
○○리 간이화장실	○○면 ○○리 145	14,300,000	2018년도	27,950	
			2019년도	28,300	
			2020년도	28,300	
□□□□□□□□□□ (●●●● ◆◆조형물)	○○면 ○○리 일원	150,000,000	2019년도	296,850	
			2020년도	296,850	

※ ○○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과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탐방로에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이 ○○○◆◆테마파크(현 □□□▣▣▣▣▣▣●●● 조성부지 내)로 이전 설치(이전일자 미상)하였음에도 건물시설물 공제등록 위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고 1. 현황과 같이 탐방로 ◆◆조형물외 2건에 대하여 시설물 철거 시에는 건물시설물 공제등록 변경(해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철거 시설물로 인한 공제 납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건물시설물 공제등록 변경(해지) 신청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공제업무 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업무를 소홀히 한 R(현. ▣▣), F(현. ●●), P(현. ◎◎)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건물시설물 공제등록 변경(해지) 조치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ㄱ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정수물품 구입 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정수물품 구입 업무 부적정 내역]

연번	분류번호	물품명	규격명	구입일자	보유수량 (단위: 대)	취득단가 (단위: 원)	비고
1	41103202	실험용세척기	Netzsch-belimed DE/IN 1-I	2018. 7.25.	1	1,310,000	정수
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엘지전자 CN/15UB470-GA7SKN Intel Core i7 6500U(2.5GHz)	2018. 7.24.	1	1,226,580	정수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I.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⑩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정수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관리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 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7. 행정안전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5-27호(2015. 7.27.)]한 지방자치단체 정수 관리 대상 주요 물품을 총57종으로 고시하였으며 실험용세척기(물품분류번호 41103202)와 노트북컴퓨터(물품분류번호 43211503) 물품도 정수물품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2018년도에 수장고 보존처리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1. 현황과 같이 실험용세척기 및 노트북컴퓨터는 정수물품 관리대상으로 회계연도마다 물품관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 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이를 해당 공사 시설비로 구입하는 등 정수물품 구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정수물품 구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S(현 ♣♣)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ㄱ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요구

제 목 공유재산(건축물)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별표1]과 같이 공유재산(건축물) 관리명세와 같이 공유재산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건축허가),제14조(건축신고),제19조(용도변경),제20조(가설건축물),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거니 아니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통보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는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공부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등기·등록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권리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는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공사 완료 통보 미이행

- □□□▣▣▣▣▣▣●●●에서는 【별표 1】 공유재산(건축물) 관리 명세 연번 9. 20\*\*.\*.\*.공사 준공된 ○○면 ○○리 산58-1 주차장 행정지원센터 9㎡ 가설건축물, 연번 10. 20\*\*.\*.\*.준공된 ○○면 ○○리 95-1 주차장 매표소 12㎡ 가설건축물, 연번 11. 20\*\*.\*.\*. 공사 준공된 ○○면 ○○리 98 주차장 버스기사쉼터 26㎡ 가설건축물, 연번 12. 20\*\*.\*.\*. 공사 준공된 ○○군 ○○면 ○○리 962 야영장 화장실 119㎡(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고성군수)와 협의 및 공사 완료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물 1동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아니하였으며, 가설건축물 3동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6.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공유재산(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이행 및 실태조사 소홀

- □□□▣▣▣▣▣▣●●●에서는 【별표 1】 공유재산(건축물) 관리 명세와 같이 하이면 덕명리 82외 8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 연번 1. 20\*\*.\*.\*.\*. 공사 준공된 □□▣▣▣ 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10㎡
  - 연번 2. 20\*\*.\*.\*.\*.공사 준공된 ◆◆▣▣▣체험장 지상3층 휴게음식점(제1종근린생활시설) 234㎡
  - 연번 3. 20\*\*.\*.\*.\*.공사 준공된 ■■■ ◆◆△△△ 지상1층 △△△(관광휴게시설) 136.32㎡, 20\*\*.\*.\*.\*. 공사 준공된 지상1층 휴게음식점(제1종근

린생활시설) 15.3m<sup>2</sup>, 20\*\*.\*\*.\*. 공사 준공된 지상2층 △△△(관광휴게시설) 146.34m<sup>2</sup>, 20\*\*.\*\*.\*. 공사 준공된 지상2층 휴게음식점(제1종근린생활시설) 19.06m<sup>2</sup>

- 연번 4. 20\*\*.\*\*.\*. 공사 준공된 ○○◆◆□□□□ 지하1층 화장실(문화및 집회시설) 49.3m<sup>2</sup>, 지하1층 창고(문화및집회시설) 26.68m<sup>2</sup>, 지하1층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 75.98m<sup>2</sup>

- 연번 7. ○○면 ○○리 15번지 20\*\*.\*\*.\*. 공사 준공된 ●●● ▷▷시설  
샤워실(수련시설) 144.73m<sup>2</sup>

- 연번 12. 20\*\*.\*\*.\*. 공사 준공된 ○○면 ○○리 962 야영장 화장실 119m<sup>2</sup>

- 총 11개 건축물 976.71m<sup>2</sup>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2020.6.감사일 현재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고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장은

- 건축물 대장 미생성 및 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과와 협의하여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대장 생성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정)
- 공유재산(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정)
-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을 비치하고, 향후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또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공유재산(건축물) 관리 명세

연번	대지위치	건물명칭	건축면적 (㎡)	구조	규모	용도	공사 준공일자	건축물 대장생성 일자	등기일자	비고
1	○○면 ○○리	-	497.73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1층 (주1)	문화및집회시설	2004.05.15	2004.05.15	2007.09.10	
			1172.55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1층 (주1)	문화및집회시설	2004.05.15	2004.05.15	2007.09.10	
			1148.19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2층 (주1)	문화및집회시설	2004.05.15	2004.05.15	2007.09.10	
			623.3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3층 (주1)	문화및집회시설	2004.05.15	2004.05.15	2007.09.10	
			21	경량철골구조	지상1층 (부1)	문화및집회시설 (매표소)	2006.12.07	2006.12.07	2007.09.10	
			10	경량철골조/강판	지상1층 (부2)	제1종근린생활 시설(매점)	2017.10.27	2017.10.27	미등기	
2	○○면 ○○리	-	117	철근콘크리트 조/슬래브	지상1층 (주1)	문화및집회시설 (창고)	2010.04.16	2011.01.04	2011.03.28	
			234	철근콘크리트 조/슬래브	지상2층 (주1)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2010.04.16	2011.01.04	2011.03.28	
			234	철근콘크리트 조/패널	지상3층 (주1)	제1종근린생활 시설(휴게음식점)	2015.06.01	2016.11.15	미등기	
3	○○면 ○○리	-	136.32	일반철골구조	지상1층 (주1)	관광휴게시설 (전망대)	2009.10.08	2017.07.07	미등기	
			15.3	일반철골구조	지상1층 (주1)	제1종근린 (휴게음식점)	2017.06.22	2017.07.07	미등기	
			146.34	일반철골구조	지상2층 (주1)	관광휴게시설 (전망대)	2009.10.08	2017.07.07	미등기	
			19.06	일반철골구조	지상2층 (주1)	제1종근린 (휴게음식점)	2017.06.22	2017.07.07	미등기	
4	○○면 ○○리	-	49.3	철근콘크리트 조/슬래브	지하1층 (주5)	문화및집회시설 (화장실)	2016.12.27	2017.03.15	미등기	
			26.68	철근콘크리트 조/슬래브	지하1층 (주5)	문화및집회시설 (창고)	2016.12.27	2017.03.15	미등기	
			75.98	철근콘크리트 조/슬래브	지상1층 (주5)	제2종근린 (일반음식점)	2016.12.27	2017.03.15	미등기	
5	○○면 ○○리	-	373.2	철근콘크리트 조	지하1층 (주)	문화및집회시설 (창고,수장고)	2010.09.30	2012.02.02	2013.03.06	
			422.93	철근콘크리트 조	지상1층 (주)	문화및집회시설 (사무실,소장실)	2010.09.30	2012.02.02	2013.03.06	
			377	철근콘크리트 조	지상2층 (주)	문화및집회시설 (회의실,학예연구실)	2010.09.30	2012.02.02	2013.03.06	
6	○○면 ○○리	-	83.8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1층 (주)	제1종근린 (공중화장실)	2005.11.07	2005.11.07	2007.09.10	
7	○○면 ○○리	-	125.26	철근콘크리트 조/슬래브	지상1층 (주1)	수련시설(야영장(관리동))	2004.09.10	2004.09.10	2007.09.10	
			93.75	철근콘크리트 조/슬래브	지상1층 (부1)	수련시설(야영장(화장실))	2006.03.28	2006.03.28	2007.09.10	
			144.73	철근콘크리트 조/슬래브	지상1층 (부2)	수련시설(야영장(샤워실))	2019.12.26	2019.06.20	미등기	
8	○○면 ○○리	-	15.12	경량철골구조	지상1층	관광휴게시설 (화장실)	가설건축물 존치 수리 (2017.05.19.~2022.05.11.) 건축개발과-18938(20.5.8.)		-	
9	○○면 ○○리	-	9	-	지상1층	행정지원센터	2009.08.06	가설건축물 축조 미협의	-	
10	○○면 ○○리	-	12	-	지상1층	주차매표소	2008.11.09	가설건축물 축조 미협의	-	
11	○○면 ○○리	-	26	-	지상1층	버스기사쉼터	2010.03.31	가설건축물 축조 미협의	-	
12	○○면 ○○리	-	119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야영장 화장실	2003.12.30	대장 미생성	미 등기	

자료: ○○ 내부자료 및 관계 서류에 따라 작성함.

【일련번호: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요구

제 목 공유재산 토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미이행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은 ○○군 ○○면 ○○리·○○리, ○○면 ○○리 일원 5,106km<sup>2</sup> (육지 1.334km<sup>2</sup>, 해상 3.772km<sup>2</sup>)에 대하여 1983.11.10.(고성군 고시 제20호)로 지정되어, ◆◆▣▣▣▣은 ○○군 ○○면 ○○○로 618(○○리 8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7,081m<sup>2</sup>에 건축연면적 3,441m<sup>2</sup>(지하1층/지상 3층)에 20\*\*.\*\*.\*\*.개관하여 20\*\*.\*\*.\*\*.제1종 √√△△△ 등록(경상남도)하여 및 부대시설(식당 및 체험장, 수장고, 둥가리카페, ◆◆조형물, ◆◆탑, 주차장, 야외시설 등)을 공원계획에 따라 계속 □□□▣▣▣▣▣▣ 및 ●●●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 자연공원법령에 따른 ▣▣▣▣▣▣계획의 결정·변경 등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의 관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을 조성을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준공하였다.
- 또한 □□□▣▣▣▣▣▣●●●에서는 공유재산인 토지 89필지 241,701m<sup>2</sup>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상세 지번 및 토지 현황 생략)

### 2. 관계법령(판단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분할 신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1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80조(합병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합병 신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에 따르면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등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75호서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 ▣▣▣▣▣▣ △△△에서는 자연공원법령에 따른 ▣▣▣▣▣▣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따른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령에 따른 박물관의 설립 및 등록,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 조성 및 등록, 그 부대시설 등을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준공하였다.
- 이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따라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대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별표 2】 공유재산 토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미이행 명세와 같이 17필지 48,197㎡에 대하여 2020.6.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미이행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공유재산 토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미이행 필지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2】

공유재산 토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미이행 명세

연번	재산명	소재지	면적 (㎡)	취득일자	대장상 지목	실제 지목	설명	비고
계		17필지	48,197					
1	○○○○◆◆□□□□	-	24,878	2002.09.11	전	공원	○○○ □□□□	
2	○○○○◆◆□□□□ 전망대	-	1,187	2002.04.02	전	공원	○○○ □□□□	
3	○○○○◆◆□□□□ 동물원	-	182	2006.01.01	전	공원	○○○ □□□□	
4	○○○○◆◆□□□□ 공원놀이터	-	415	2002.04.22	전	공원	○○○ □□□□	
5	◆◆□□□□ 본관	-	6,764	2004.01.14	전	대	◆◆□□□□	
6	◆◆◆ 부지	-	545	2001.11.23	임야	공원	◆◆□□□□ 앞	
7	◆◆◆ 도로 등	-	1,990	2002.10.05	전	공원	◆◆□□□□ 진입로 등	
8	☆☆☆ 주차장	-	278	2004.01.14	전	주차장	◆◆□□□□ 주차장	
9	☆☆☆ 주차장	-	616	2003.12.12	답	주차장	“	
10	☆☆☆ 주차장	-	5,448	2004.03.12	답	주차장	“	
11	☆☆☆ 주차장	-	605	2003.11.11	전	주차장	“	
12	☆☆☆ 주차장	-	115	1986.09.22	유지	주차장	“	
13	☆☆☆ 주차장	-	1,709	2004.03.09	전	주차장	“	
14	☆☆☆ 주차장	-	954	2003.11.18	답	주차장	“	
15	☆☆☆ 주차장	-	73	2006.05.15	전	주차장	“	
16	☆☆☆ 주차장	-	942	2004.06.04	대	주차장 또는 도로	◆◆□□□□ 주차장 및 도로	
17	☆☆☆ 주차장	-	1,496	2004.06.04	답	주차장 또는 도로	◆◆□□□□ 주차장 및 도로	

자료: ○○ 내부자료 및 관계 서류에 따라 작성함.

【일련번호: 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아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연번	공사명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1	□□□□◆◆길 도장공사	65,000	59,390	5,610	20**.*.**. ~20**.*.*.	(주)ㄱㄱ A
2	□□□□□□□□□□ □□□□ 조성사업(총괄분)	2,003,184	1,683,330	319,854	20**.*.**. ~20**.*.**.	(주)ㄴㄴ B
	□□□□□□□□□□ □□□□ 조성사업(1차분)	837,403	723,273	114,130	20**.*.**. ~20**.*.**.	
	□□□□□□□□□□ □□□□ 조성사업(2차분)	1,165,781	960,057	205,724	20**.*.**. ~20**.*.**.	
3	◆◆□□□□ 리모델링공사	52,800	47,640	5,160	20**.*.**. ~20**.*.**.	(주)ㅇㅇ C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구)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기준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를 보면 공사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시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외부인 출입금지, 공사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웬스, PE드럼 등), 근로자의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길 도장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에서 20\*\*.\*.\*\*. (주)♯♯(대표 A)와 계약을 체결한 「□□□◆◆길 도장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안전

시설(현수막, 안전입간판, 라바콘)의 구입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다고 집행내역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 요청 시 [별표 1]과 같이 사용불가 항목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서 공사비 약 1,130,000원 상당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별표 1 □□□◆◆길 도장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내역]

연번	사용년월	사용내역	당초(원)	변경(원)	사유, 차액
1	20**.*.	현수막	240,000	0	안전시설: 불가
		안전입간판	600,000	0	안전시설: 불가
		안전화	160,000	160,000	안전장구: 가능
		라바콘	225,000	0	안전시설: 불가
	소 계		1,225,000	160,000	
	안전관리비적용		1,010,350	160,000	△850,350
	순공사원가		43,133,526	42,283,176	
	일반관리비(6%)	6%	2,588,011	2,536,990	
	이윤(15%)	15% 이내	13.99% 6,366,131	13.99% 6,234,379	
	총 원 가		52,088,000	51,054,545	
	부가가치세(10%)		5,208,000	5,105,455	
	도 급 액		57,290,000	56,160,000	△1,130,000

※ 자료: ○○ 제출 자료 재구성

나. □□□▣▣▣▣▣●●● 조성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에서 20\*\*.\*.\*\*. (주) ♡ ♡ (대표 B)와 계약을 체결한 「□□□◆◆길 도장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전담하지 않은 장비·유도 신호수)와 안전시설(안전 로프, 타포린, PE드럼, 신호봉)의 구입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다고 집행내역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1차분 공사 준공 요청 시 [별표 2]와 같이 사용불가 항목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1차분 공사를 준공처리함으로서 공사비 약 6,508,000원 상당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별표 2 □□□▣▣▣▣▣▣ ◐◑◒ 조성사업(1차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내역]

연번	사용년월	사용내역	당초(원)	변경(원)	사유, 차액
1	20**.*. .	안전시설, 안전장구	377,500	50,000	안전시설: 불가 안전장구: 가능
2	20**.*. .	안전장구	275,000	275,000	안전장구: 가능
3	20**.*. .	기술지도계약수수료	720,000	720,000	기술지도계약수수료: 가능
4	20**.*. .	신호수인건비, 안전장구	3,545,000	450,000	신호수인건비: 불가 안전장구: 가능
5	20**.*. .	신호수인건비, 안전시설	1,815,000	0	신호수인건비: 불가 안전시설: 불가
6	20**.*. .	기술지도계약수수료	1,440,000	1,440,000	기술지도계약수수료: 가능
	소 계		8,172,500	2,935,000	
	안전관리비적용		7,919,538	2,935,000	△4,984,538
	순공사원가		550,966,844	545,982,306	
	일반관리비(6%)	6%	33,058,010	32,758,938	
	이윤(15%)	15% 이내	11.99% 53,666,055	11.99% 53,033,301	
	총 원 가		637,690,909	631,774,545	
	부가가치세(10%)		63,769,091	63,177,455	
	도 급 액		701,460,000	694,952,000	△6,508,000

※ 자료: ○○ 제출 자료 재구성

#### 다. ◆◆◐◑◒ 리모델링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에서 20\*\*.\*.\*. (주) .: .: (대표 C)와 계약을 체결한 「◆◆◐◑◒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공사안전표지판, 안전테이프, 드럼라바콘)의 구입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다고 집행내역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 요청 시 [별표 3]와 같이 사용불가 항목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서 공사비 약 336,000원 상당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별표 3 ◆◆○○○○ 리모델링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내역]

연번	사용년월	사용내역	당초(원)	변경(원)	사유, 차액
1	20**.**.	공사안전표지판	210,000	0	안전시설: 불가
		안전테이프	12,000	0	안전시설: 불가
		드럼라바콘	40,000	0	안전시설: 불가
		안전장구	665,000	665,000	안전장구: 가능
	소 계		927,000	665,000	
	안전관리비적용		916,557	665,000	△251,557
	순공사원가		35,623,246	35,371,689	
	일반관리비(6%)	6%	2,137,394	2,122,301	
	이윤(15%)	15% 이내	14.44% 3,497,459	14.44% 3,458,654	
	총 원 가		41,341,873	41,036,418	
	부가가치세(10%)		4,134,187	4,103,642	
	도 급 액		45,476,060	45,140,060	△336,000

※ 자료: ○○ 제출 자료 재구성

### 처분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Q(현 ⊗⊗), S(현 □□)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 장은

공사 완료된 □□□◆◆길 도장공사의 안전관리비 1,130천원 및 ◆◆○○○○ 리모델링공사의 안전관리비 336천원은 회수 조치, 공사 추진 중인 □□□▣▣▣▣▣▣▣▣▣ 조성사업의 안전관리비 6,508천원은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